

【한국철도공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요청

개정 요청사항

◆ (책임기술자 등급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기준에 따른 조정요청

□ 개정 요청사유

- 정밀안전점검 발주시 귀 공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공고 2018.03.23. 제6호)에 있어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기준(고급기술자이상)보다 상향(특급기술자)되어 있어, 시설물안전법의 기준에 맞지 않음.
- 이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배치되며, 입찰참가시 참여기회 박탈등 과도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시설물안전법의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불이익 등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기준 및 개정요청(안)

구 분		시설물안전법 기준	귀 공사 기준	개정요청(안)	비고
안전 점검	사업책임	고급기술자 이상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근거: 시설안전법 시행령9조 제1항, 별표5
	분야책임	고급기술자 이하 차등평가	특급기술자 이하 차등 평가	고급기술자 이하 차등평가	
	참여 기술자	고급기술자 이하 차등평가	고급기술자 이하 차등 평가	고급기술자 이하 차등평가	

참고) 타 발주처(예, 한국도로공사 등)는 「시설물안전법」 기준에 맞게 시행 중

- 붙임**
1. 시설안전법 시행령 「별표 5」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2. 한국철도공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3. 타발주(한국도로공사)기관 안전점검 발주기준

붙임1

시설안전법 시행령 별표 5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8. 12. 11.> [시행일:2019. 1. 1.]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토목,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일 것
	나.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 건축 직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

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붙임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공고 2008. 8. 22. 제 35호
공고 2009. 1. 20. 제 3호
공고 2010. 2. 24. 제 6호
공고 2011. 4. 18. 제 14호
공고 2012. 2. 17. 제 5호
공고 2013. 2. 21. 제 2호
공고 2014. 3. 7. 제 5호
공고 2015. 12. 9. 제 34호
공고 2018. 3. 23. 제 6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 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 기준·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이라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와 철도분야의 계측관리 용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분야”란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도 및 경전철을 말한다.
2. “당해분야용역”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 등록분야 중 철도분야의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을 말한다.
3. “그 외의 분야”란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6의 등록분야 중 교량·터널·건축물로 “당해분야용역”을 제외한 분야를 말한다.

제4조(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에서 <별표 3>까지에 의하여 평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용한다.

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자	(1) 사업 책임기술자	[45]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가) 등급	(18)	○ 절대평가
	(나) 경력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8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실적(금액)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5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자	(18)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6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5	- 용역건수(5점)에 따라 평가
	실적(금액)	5	-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9)	○ 절대평가
	(가) 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	3	- 참여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건수)	4	-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업체)	(1) 건수	[25]	○ 절대평가
	(2) 금액	(12)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3)	-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	[10]	○ 절대평가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 용역업자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평가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참여건설기술자가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사용 실적	[10]	○ 절대평가
		(2)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
	(2)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1) 사업 책임기술자	[10]	○ 절대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자	(6)	-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바. 가·감점	(1) 참여업체 및 기술자	[±4]	- 최근 5년간 참여업체 및 기술자에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평가
	(2) 청렴계약 특별 신인도	(-3)	-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 고용여부에 따라 평가
	(3) 신규고용	(-4)	-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부여
		(+0.3)	

세 부 평 가 기 준

가. 참여기술자(45점)

1) 공통사항

가) 참여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 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기술자격 요건은 세부평가기준 2)등급 가)기술자 등급 기준을 따르며, 성능평가 교육 요건은 2018년 4월 18일 이전 입찰공고 한 용역의 경우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는 교육이수 여부는 평가에서 제외하나 성능평가 업무 시행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의 수준이 서로 다른 용역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평가한다.

(예시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검검을 함께 발주한 경우 상위 수준의 용역인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자격요건으로 평가한다.)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분야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당해분야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 따른다.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라)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각 분야별로 각각 1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마)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겸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와 제40조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중 “당해분야 용역”에 실제 참여기간 및 수행실적을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는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경력 및 실

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예시 : 사업 책임기술자의 “그 외의 분야” 정밀안전진단 참여기간이 20년인 경우 인정경력은 3.5년 임(7년×50%=3.5년 < 20년×50%=10년)]

아) 발주청·감독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2) 등급(4점) : 절대평가

- 기술자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용역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로 한다.
- 발주되는 용역의 수준에 따라 기술자 등급에 점수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기술자격 등급기준 미달 시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사업 책임기술자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 자격요건은 용역대상에 터널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된다.

가) 기술자 등급

(1) 정밀안전진단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 기술자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건축분야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분야별 책임 기술자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분야별 참여 기술자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건축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건축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0%

(2) 안전점검용역

구분			등급	점수비율
사업책임 기술자 (0)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삭도, 토목구조, 토질·지질(터널)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건축분야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분야 별 책임 기술 자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8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8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8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특급기술자	100%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80%
분야 별 참여 기술 자 (2)	교량 및 터널분야	철도분야	철도·삭도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철도·삭도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철도·삭도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60%
		구조분야	토목구조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토목구조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토목구조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60%
		기타분야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고급 기술자 이상	10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토질·지질, 토목시공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60%
	건축분야	건축분야	건축 전문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00%
			건축 전문분야 중급기술자	80%
			건축 전문분야 초급기술자	60%

3) 경력(17점) : 절대평가

가)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다만, 합산한 경력 년수는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8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사업 책임기술자	8.0 점	7.2점	6.4 점	5.6 점	4.8 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6점)

구 분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자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3점)

구 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자	3.0 점	2.7 점	2.4 점	2.1 점	1.8 점

4) 실적(24점) :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14점)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건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5점)

구 분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사업 책임기술자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구 분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자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참여기술자(4점)

구 분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분야별 참여기술자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나) 용역금액(10점) :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수행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사업 책임기술자(5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억원 이상	9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사업 책임기술자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자(5점)

구 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분야별 책임기술자	5.0 점	4.5 점	4.0 점	3.5 점	3.0 점

다)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관리한 것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용역 실적 건수는 완료된 용역을 1건으로 인정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마)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과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아)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 절대평가

1)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12점)

구 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점 수	12.0 점	10.8점	9.6점	8.4점	7.2점

2)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13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13.0 점	11.7점	10.4점	9.1점	7.8점

3)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것

을 합계하여 평가한다.

- 4) 업체의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 실적을 평가할 때는 “당해분야용역”의 실적에 한정하여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분야” 경력은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에 해당하는 실적(건수 및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
- 5) 건축물 분야는 “당해분야용역” 및 “그 외의 분야” 실적을 100% 반영한다.
- 6)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 신용도(10점) : 절대평가

1)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평가결과(4점) : 절대평가

- 가)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시정’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 나)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 다)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대한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2)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3점) : 절대평가

- 가) 용역업체가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용역참여기술자가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 다) 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절대평가

- 가)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1참조>

나) 신용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점	2.7 점	2.4 점	2.1 점	0 점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1)할 수 있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 절대평가

1) 개발·사용 실적(2점) : 절대평가

가)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한다. 또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함

※ 건설신기술의 사용실적은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건축)의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계측관리용역 및 보수·보강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하며, 특허의 사용실적은 해당분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에서 활용한 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에서 제시한 보수·보강 공법은 제외한다.

[예시 : 건설신기술 1건 사용실적 5건(8억), 특허는 1건 사용실적 5건(8억)인 경우 실적 인정은 1.44점 임(건설신기술 0.9점(1점×0.9)+특허 0.54점(0.6점×0.9)]

라)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적용한다.

마) 기술개발·사용실적은 최초 출원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바)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사) 합계점수는 2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투자실적(8점) : 절대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

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분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구 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나)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중첩도(10점) : 절대평가

- 1) 현재 수행 중에 있는 용역(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의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용역의 장기계속 용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잔여 참여예정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중첩된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2배로 계산한다.
- 3)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도(잔여과업기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자 점수는 기술자별로 계산한 후 합산·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

구 분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책임기술자	6.0 점	5.4 점	4.8 점	4.2 점	3.6 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4.0 점	3.6 점	3.2 점	2.8 점	2.4 점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 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다.

바. 가·감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감점

가) 열차사고(열차탈선·선로장애 등) 및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에 대한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평가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감점 (건당)
① 용역 시공중 열차탈선 사고 또는 선로장애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 및 참여기술자	-3	A. 60분 이상 B. 40분 이상 ~ 60분 미만 C. 20분 이상 ~ 40분 미만	-3.0 -2.0 -1.0
② 업무지시 불이행한 업체 및 참여기술자		A.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3회이상 불이행 한 자 B.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2회이상 불이행 한 자 C. 차단업무 등 업무지시 1회이상 불이행 한 자	-3.0 -2.0 -1.0
③ 철도교통사상사고 유발한 업체 및 참여기술자		A.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B.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C.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인 이상 발생	-3.0 -2.0 -1.0

나) ①항의 A~C등급은 철도공사의 조사결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 관리용역 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된 열차탈선사고 또는 선로장애사고를 발생시켜 철도의 공신력 및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열차운행중지 및 지연시간에 따라 감점한다.(평가반영은 조사결과 보고서 결재일 기준)

②항 A~C등급은 발주청(중앙행정기관 포함)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발주청에서 업체에 서면 경고한 횟수에 따라 감점 한다.(평가반영은 업무지시 공문시행일 기준)

다) ③항의 “철도교통사상사고”란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계측관리 용역계약 후 계약기간 내 열차운행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상자(작업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하며, 2018년 3월 21일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마) 업체와 기술자가 중복될 경우 감점이 높은 항목으로 평가한다.

바)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감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감점한다.

2)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신인도 감점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감점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기준 재취업제한대상자 고용한 업체		-4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재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3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재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2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취업제한 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1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제한 대상업체(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정함)가 재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평가상 불이익

※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퇴직일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행일(2014.3.10.) 이전인 경우 평가하지 않음

3)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0.1~0.3점)

가)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 고용인원

비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산점수	0.1점	0.2점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정한다.

다)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4) 위의 가·감점수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사. 기타사항

1) 평가자 선정

평가자는 용역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보안유지

평가자 및 평가에 관련된 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가)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나)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전까지)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4)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3”을 기준으로 하되,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로 평가한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유사 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 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평가하며 지분율이 소수 이하일 경우 최소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8)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최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2자리까지로 평가하며, 평가한 총계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사업수행 능력평가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시켜야 한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75점 이상인 업체는 모두 선정한다.

10)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마지막 선정된 업체가 동점일 경우 동점업체 모두를 선정한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가격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12) 1개 업체가 2건 이상 용역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를 각각의 용역에 중복 배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예시 : A용역과 B용역이 각각 공고된 후 H사가 A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낙찰자가 확정된 후 B용역에 평가서 제출시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이 아님, 그러나 A용역의 낙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용역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 중복배치 여부 검토 대상임)

1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용역의 경우에는 별도 기술자평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평가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다.

14)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총점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별표 3>

평 가 기 준

평가 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1. 참여기술자 (45)	자격 또는 등급		사업 책임기술자	-	해당용역 동등이상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분야별 책임기술자	2	
			분야별 참여기술자	2	
			소 계	4	
	경력 (기간)		사업 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참여기술자	3	
			소 계	17	
	최근 7년간 실적 (건수 및 금액)	건 수	사업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4	
			소 계	14	
		금 액	사업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책임기술자	5	
분야별 참여기술자			-		
소 계			10		
계			45		
2. 유사용역 사업실적 (25)	최근 5년간(업체)		건 수	12	해당용역 동등이상의 실적만 인정
			금 액	13	
			계	25	
3. 신용도(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설도			3	
	계			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 실적			2	
	투자 실적			8	
	계			10	
5. 업무 중첩도 (10)	사업 책임기술자			6	
	분야별 책임기술자			4	
	계			10	
합 계				100	
감 점				±4	
총 계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고속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2019.

I. 일반 사항

1. 본 평가기준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의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이하 PQ로 한다)으로서 당해 용역은 이 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2. PQ 평가를 실시하는 용역업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단, 하자만료전 마지막 정밀안전점검용역과 성능평가용역(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할 경우도 포함)은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PQ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업책임기술인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자격(기술자격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중 지분율이 높은 업체가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이 지분율과 현저하게 다른 인원비로 참여하는 것으로 PQ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때 지분율에 따른 인원 산정시 소수이하는 올림 또는 버림하여 조정하되 참여업체별 최소 1인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마. 우리 공사에서 정한 다음의 참여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평가결과가 미흡(70점미만 60점이상), 시정(60점미만 50점이상) 또는 부실(50점미만)인 경우 해당용역의 전체 구조물에 대한 재검토후 지적사항(건수)에 대한 조치실적(건수)이 50%미만인 경우
-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기술인 변경(교체, 제외, 추가) 사항 미보고 사례 발견 누적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

3. 1개 업체가 동일 공고 건에 있는 2개 이상의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때,

책임기술인(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를 다른 용역에 책임 또는 참여기술인으로 중복 배치하는 계획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책임기술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PQ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에 오류나 누락사항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4. 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PQ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해당용역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경력의 기산일은 관련법령이 제정된 1995년 1월 5일 이후로 한다.
9.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결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할 수 없고,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12. PQ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3. PQ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교량 및 터널'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 또는 동법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용역 수행실적 중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청이 시행한 준공된 수행실적으로 한다.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은 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있는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을 말하며 해당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의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술인 경력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2) 참여기술인 실적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실적확인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마.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

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 분야의 시설물에 대하여 발주청이 시행한 준공된 용역을 말한다.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은 도로법 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설치되어 차량통행이 있는 도로교량 또는 도로터널을 말하며 해당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9에 의거 교량, 터널, 복개구조물, 지하차도, 공동구를 포함한다.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로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발주청이 발급 또는 확인한 실적증명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실적확인서(단 대상시설물, 계약기간, 금액 등의 실적확인이 곤란한 경우 제외)

3.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건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업체에서 받은 건수를 말한다.

4.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하며, 처분사항은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처분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참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사용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세부평가기준에서 제시된 사항만 인정한다.

1)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8. 평가요소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요소의 최저 점수로 평가한다.

[첨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3.0	AAA	-	AAA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2.8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2.1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Ⅲ. 입찰참가자 선정

본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은 아래 기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며, 심사결과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IV.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가. 참여 기술인	소 계	45																	
	1) 등 급	4	① 공통사항 - 기술인의 기술등급 직무분야는 경력증명서 상의 설계·시공 등의 토목분야로 한다. - 정밀안전점검용역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 한다. - 시설물의 성능평가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②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 공통사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기술등급은 토목 직무분야 고급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실격 - 분야별 책임기술인 <table><tr><td>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td><td>점수</td></tr><tr><td>직무분야 고급이상</td><td>1.0</td></tr><tr><td>직무분야 중급</td><td>0.6</td></tr><tr><td>그 외 등급</td><td>0.0</td></tr></table> - 분야별 참여기술인 <table><tr><td>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td><td>점수</td></tr><tr><td>직무분야 고급이상</td><td>1.0</td></tr><tr><td>직무분야 중급</td><td>0.6</td></tr><tr><td>그 외 등급</td><td>0.0</td></tr></table>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기술인 등급(설계·시공 등)	점수																	
	직무분야 고급이상	1.0																	
	직무분야 중급	0.6																	
	그 외 등급	0.0																	
가) 사업책임기술인	-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 재료시험분야	(1.0)																		
· 자료분석분야	(1.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 재료시험분야	(1.0)																		
· 자료분석분야	(1.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2) 경 력	17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가) 사업책임기술인	8.0	<table><tr><td>경력기간</td><td>6년 이상</td><td>6년미만 5.5년이상</td><td>5.5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 미만</td></tr><tr><td>점수</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경력기간	6년 이상	6년미만 5.5년이상	5.5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 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6.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재료시험분야	(3.0)	<table><tr><td>경력기간</td><td>5년 이상</td><td>5년미만 4.5년이상</td><td>4.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 미만</td></tr><tr><td>점수</td><td>3.0</td><td>2.7</td><td>2.4</td><td>2.1</td><td>1.8</td></tr></table>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경력기간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 미만									
			점수	3.0	2.7	2.4	2.1	1.8									
			· 자료분석분야	(3.0)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3.0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재료시험분야	(1.5)	<table><tr><td>경력기간</td><td>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 1년이상</td><td>1년미만</td></tr><tr><td>점수</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able>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경력기간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점수	1.5	1.35	1.2	1.05	0.9												
· 자료분석분야	(1.5)																
② 경력은 “해당전문분야”에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참여일’(참여기간 아님)로 본다.																	
③ “해당전문분야”는 ‘교량 및 터널’이며,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 해당전문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참여일의 100%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3) 실적(건수) 가) 사업책임기술인	14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5.0	<table><tr><td>실적 (건수)</td><td>15건이상</td><td>15건미만 12건이상</td><td>12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td></tr><tr><td>점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실적 (건수)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실적 (건수)	15건이상	15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 재료시험분야 · 자료분석분야	5.0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table><tr><td>실적 (건수)</td><td>12건이상</td><td>12건미만 9건이상</td><td>9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3건이상</td><td>3건미만</td></tr><tr><td>점수</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실적 (건수)	12건이상	12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2.5)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 재료시험분야 · 자료분석분야	4.0	-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table><tr><td>실적 (건수)</td><td>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 2건이상</td><td>2건미만</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실적 (건수)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수		2.0	1.8	1.6	1.4	1.2									
(2.0)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 실적(금액)	1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가) 사업책임기술인	5.0	<table><tr><td>실적 (금액)</td><td>7억이상</td><td>7억미만 6억이상</td><td>6억미만 5억이상</td><td>5억미만 4억이상</td><td>4억미만</td></tr><tr><td>점수</td><td>5.0</td><td>4.5</td><td>4.0</td><td>3.5</td><td>3.0</td></tr></table>	실적 (금액)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실적 (금액)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수	5.0	4.5	4.0	3.5	3.0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재료시험분야	(2.5)	<table><tr><td>실적 (금액)</td><td>6억이상</td><td>6억미만 5억이상</td><td>5억미만 4억이상</td><td>4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점수</td><td>2.5</td><td>2.25</td><td>2.0</td><td>1.75</td><td>1.5</td></tr></table>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실적 (금액)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2.5	2.25	2.0	1.75	1.5										
· 자료분석분야	(2.5)														
		② 최근 7년간의 준공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준공 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실적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기술인 실적(금액)은 해당분야 수행실적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한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제 참여한 기간은 경력증명서의 주요경력의 '참여일'(참여기간 아님)로 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계약기간 120일인 용역을 50일 참여한 경우 실적(금액) = 1억원 × 50(참여일) / 120(계약기간) = 0.4억원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에도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소 계	25													
	1) 건 수	12	① 배점표 <table><tr><td>참여 건수</td><td>20건이상</td><td>20건미만 15건이상</td><td>15건미만 10건이상</td><td>10건미만 5건이상</td><td>5건미만</td></tr><tr><td>점수</td><td>12.0</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으로 평가한다. ③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1건으로 인정한다. ④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건수)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건수) = 1건 × 0.7(참여지분율) = 0.7건	참여 건수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참여 건수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2) 금 액	13	① 배점표 <table><tr><td>참여 금액</td><td>15억이상</td><td>15억미만 11억이상</td><td>11억미만 7억이상</td><td>7억미만 3억이상</td><td>3억미만</td></tr><tr><td>점수</td><td>13.0</td><td>11.7</td><td>10.4</td><td>9.1</td><td>7.8</td></tr></table> ② 최근 5년간의 준공된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연차별 준공된 용역은 최종 준공된 경우에 인정한다. ③ 유사용역의 인정범위 및 증명서류는 II.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④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금액)은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비율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산정예시 - 계약금액 1억원, 참여지분율 70%인 용역 실적(금액) = 1억 × 0.7(참여지분율) = 0.7억원	참여 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참여 금액	15억이상	15억미만 11억이상	1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신용도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신용도 평가방법은 II.항목별 세부평가 방법을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4	① 배점표 <table><tr><th>실시결과 평가결과</th><th>시정</th><th>부실</th></tr><tr><td>감점</td><td>건당 0.3점 감점</td><td>건당 0.7점 감점</td></tr></table> ②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용역건수로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실시결과 평가결과	시정	부실																	
감점	건당 0.3점 감점	건당 0.7점 감점																		
2)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① 배점표 <table><tr><th>대상</th><th>용역사</th><th>기술인</th></tr><tr><td>처분기간</td><td>입찰참가 제한기간</td><td>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td></tr><tr><td>감점</td><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td>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td></tr></table> ② 용역사 및 기술인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으로 산정한다. ※ 대상 : 토목분야, 건축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 ※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인 경우 용역사평가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기술인평가는 지분율은 고려하지 않음	대상	용역사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대상	용역사	기술인																		
처분기간	입찰참가 제한기간	기술자격 또는 업무 정지기간																		
감점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1월마다 0.2점 감점 (1월미만은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① 배점표 <table><tr><td>회사채</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d rowspan="3">미제출</td></tr><tr><td>기업어음</td><td>A3-이상</td><td>A3-미만 B-이상</td><td>C이하</td></tr><tr><td>기업신용</td><td>BBB-이상</td><td>BBB-미만 B-이상</td><td>CCC+이하</td></tr><tr><td>점수</td><td>3.0</td><td>2.8</td><td>2.1</td><td>0</td></tr></table> ※ 첨부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②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소 계	10	※ 공동이행방식 용역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을 따른다.																							
	1) 개발·사용실적	2	① 배점표 - 기본점수 <table> <tr> <td>구 분</td> <td>건설신기술</td> <td>특허</td> </tr> <tr> <td>기본점수</td> <td>건당 1.0점</td> <td>건당 0.6점</td> </tr> </table> -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table> <tr> <td>실적건수 (건)</td> <td>5이상</td> <td>4</td> <td>3</td> <td>2</td> <td>1</td> </tr> <tr> <td>실적금액 (억원)</td> <td>10이상</td> <td>10미만 8이상</td> <td>8미만 6이상</td> <td>6미만 4이상</td> <td>4미만 0.5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td> <td>0.9</td> <td>0.8</td> <td>0.7</td> <td>0.6</td> </tr> </table> - 건설·사용실적은 건별 기본점수에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가중치는 건수 또는 금액 중 큰 값을 적용하며,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가중치는 0으로 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③ 개발·사용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활용 실적 중 다음의 경우로 한다. - 건설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되어 보호기간 내에 있으며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 - 특허 :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보고서에 제시한 보수·보강공법은 제외 ④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⑤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⑥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⑦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⑧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은 일반사항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구 분	건설신기술	특허																								
기본점수	건당 1.0점	건당 0.6점																								
실적건수 (건)	5이상	4	3	2	1																					
실적금액 (억원)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0.5이상																					
가중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2) 투자실적	8	① 배점표												
			<table><tr><td>구분</td><td>3.0%이상</td><td>3.0%미만 2.5%이상</td><td>2.5%미만 2.0%이상</td><td>2.0%미만 1.5%이상</td><td>1.5%미만</td></tr><tr><td>점수</td><td>8.0</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구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투자실적 = $\frac{\text{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text{최근 3년간 건설부문총매출액 합계}} \times 100$												
			③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④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⑤ 투자실적 증명자료는 다음의 서류로 한다. - 투자액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 매출액 :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												
			※ 4월 10일 이전 입찰공고 건에 대해서는 전전년 3년간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예시 : 2019년 3월 20일 입찰공고시 제출서류 : 2015,2016,2017년도 자료)												
마. 업무 중첩도	소 계	10													
	1) 사업책임기술인	6.0	① 배점표 - 사업책임기술인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table><tr><td>구분</td><td>3월미만</td><td>3월이상 6월미만</td><td>6월이상 9월미만</td><td>9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tr><td>점수</td><td>6.0</td><td>5.4</td><td>4.8</td><td>4.2</td><td>3.6</td></tr></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재료시험분야	(2.0)	- 분야별책임기술인													
· 자료분석분야	(2.0)	<table><tr><td>구분</td><td>3월미만</td><td>3월이상 6월미만</td><td>6월이상 9월미만</td><td>9월이상 12월미만</td><td>12월이상</td></tr><tr><td>점수</td><td>2.0</td><td>1.8</td><td>1.6</td><td>1.4</td><td>1.2</td></tr></table>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2.0	1.8	1.6	1.4	1.2	
구분	3월미만	3월이상 6월미만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2월미만	12월이상										
점수	2.0	1.8	1.6	1.4	1.2										
			② 공고일을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다른용역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중복기간 : 본 용역의 입찰공고일에서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개월수 (다른 용역 :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모든 용역) ※ 전체 용역기간에 비해 실투입일수가 적은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용역 제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1) 정밀안전점검 평가	-1/전	① 배점표 <table><tr><td>전년도 평가결과</td><td>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td><td>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td><td>부실 (50점 미만)</td></tr><tr><td>감점</td><td>- 0.3</td><td>- 0.5</td><td>- 1.0</td></tr></table> ②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에 따라 감점한다. ③ 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	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	부실 (50점 미만)	감점	- 0.3	- 0.5	- 1.0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 (70점 미만 60점 이상)	시정 (60점 미만 50점 이상)	부실 (50점 미만)							
	감점	- 0.3	- 0.5	- 1.0							
2) 초기점검 평가	±1/전	① 배점표 <table><tr><td>전년도 평가결과</td><td>우수 (90점이상)</td><td>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td><td>부실 (40점미만)</td></tr><tr><td>가감점</td><td>1.0(가점)</td><td>- 0.5(감점)</td><td>- 1.0(감점)</td></tr></table> ② 전년도 초기점검 용역에 대하여 준공 전에 우리 공사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가 우수(90점이상) 또는 미흡·부실(60점미만)인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가점 또는 감점한다. ③ 가감점은 용역 건별로 산정하여 1년 단위로 합산한다. ④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가감점 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90점이상)	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	부실 (40점미만)	가감점	1.0(가점)	- 0.5(감점)	- 1.0(감점)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90점이상)	미흡 (60점미만 40점이상)	부실 (40점미만)								
가감점	1.0(가점)	- 0.5(감점)	- 1.0(감점)								
3) 기술인 관리	- 2	①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전년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 중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참여 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사례 발견 건수 - 평가점수 = (발견건수) × 1.0점(감점) ②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은 지분율대로 감점점수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 참여기술인은 PQ 평가시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관리하며, 과업중 또는 완료 후 발견된 미보고 사례건수를 기준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가감점	4) 별점	- 1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관련 별표 8의 '5. 별점측정기준'의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업체 및 기술인에게 부과되는 별점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별점에 따라 해당점수 감점 ② 별점 = $\sum(\text{용역사 누계평균별점} \times \text{지분율})$ + $\sum(\text{분야별 책임기술인 이상의 누계평균별점})$ ③ 배점표 <table><tr><th>별점</th><th>0.1점미만</th><th>0.1점이상 0.5점미만</th><th>0.5점이상 1.0점미만</th><th>1.0점이상 1.5점미만</th><th>1.5점이상</th></tr><tr><th>감점</th><td>-</td><td>- 0.25</td><td>- 0.5</td><td>- 0.75</td><td>- 1.0</td></tr></table>	별점	0.1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	- 0.25	- 0.5	- 0.75	- 1.0
	별점	0.1점미만	0.1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	- 0.25	- 0.5	- 0.75	- 1.0										
	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1~ +0.3	① 배점표 <table><tr><th>신규 고용율</th><th>1%이상</th><th>2%이상</th><th>3%이상</th></tr><tr><th>가 점</th><td>0.1</td><td>0.2</td><td>0.3</td></tr></table> -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기준)/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직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신규 고용율	1%이상	2%이상	3%이상												
가 점	0.1	0.2	0.3												